



'23년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추진절차 안내



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

- ☑ 모기업과 정부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* 소요비용 지원(모기업 50% : 정부 50%)
- * 컨설팅 및 세미나, 안전보건물품 지원 등 안전보건 활동과제

'23년 정부 지원 예산 : 75억원



지원 개요

1 유형

컨소시엄 자체 필요분야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

- 유형내용** 컨소시엄*을 구성한 모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생협력활동(컨설팅 및 안전보건 활동과제)에 대해 지원
* 컨소시엄: 100인 이상 모기업과 사내·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 그룹
- 신청기업**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 (100인 이상)
- 지원대상** 사내·외 협력업체, 지역 중소기업 (규모 제한 없음)

2 유형

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

- 유형내용**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컨설팅 과제에서 정한 상생협력활동에 대해 지원
- 신청기업**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 (100인 이상)
- 지원대상** 사내 협력업체 (50인 미만), 사외 협력업체·지역 중소기업 (규모제한 없음)
※ 단, 모기업의 업종이 조선업종 (선박건조 및 수리업)인 경우 협력업체 규모제한 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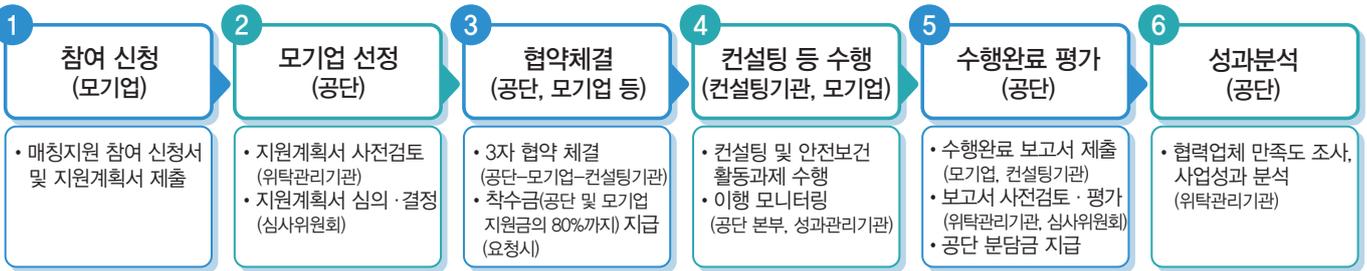
지원 내용

- ☑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6억원 한도(정부 지원금 기준)로 분담 지원

1 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로 지원 **2 유형** 협력업체 1개소 당 최고 3,000만원 한도(컨소시엄 당 최고 4억원)로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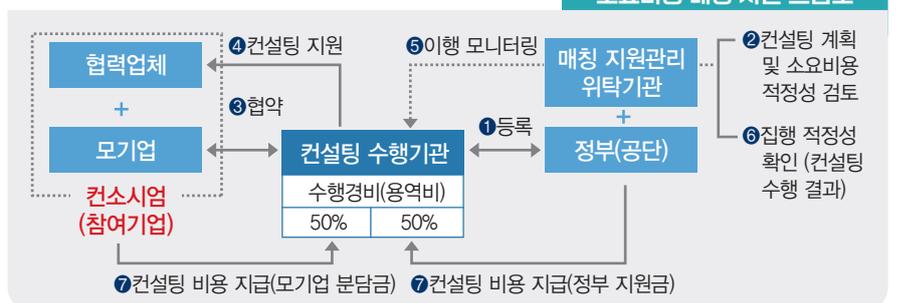
추진절차



매칭지원 흐름도

소요비용 매칭 지원 흐름도

- ☑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(용역) 지원을 지원계획서에 따라 추진하고 협약에 따라 소요비용을 분담 (모기업 50% : 정부 50%)





매칭지원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

01 참여대상 상생협력사업 참여 모기업 중 매칭지원 희망 기업

- ☑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시 매칭지원 미참여 모기업도 추가 참여 가능
- ☑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과제 및 안전보건 활동과제 외 추가과제 수시 신청 가능

02 제출시기 상생협력사업 대상 선정 이후 수시

03 제출서류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및 지원 계획서 등

04 접수방법 방문, 우편 또는 E-mail 신청

05 접수처

- ☑ 공단 광역본부(경기지역본부 포함) 안전보건체계지원부



기관명	전화번호	주소
서울광역본부	☑ 02-6711-2965 gudrms89@kosha.or.kr	☑ (우 04512)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(봉래동, 우리빌딩) 7층
부산광역본부	☑ 051-520-0531 pdong@kosha.or.kr	☑ (우 46274)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층
광주광역본부	☑ 062-949-8745 dhkim8889@kosha.or.kr	☑ (우 62364)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(무역회관 9층)
대구광역본부	☑ 053-609-0524 jsh@kosha.or.kr	☑ (우 41939)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, 삼성생명빌딩 21층
인천광역본부	☑ 032-5100-608 kys@kosha.or.kr	☑ (우 21417)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
대전세종광역본부	☑ 042-620-5615 brainers@kosha.or.kr	☑ (우 34122)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, 2층
경기지역본부	☑ 031-259-7172 paran44@kosha.or.kr	☑ (우 1622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7층

06 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문의처

- ☑ (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) (주)자비스 : 02-457-0002
- ☑ (공단 본부) 산업안전실 자율안전사업부 : 052-7030-631,635
*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다운로드 :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▶ 사업안내 ▶ 산업안전 ▶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▶ 자료실 ▶ # 38

07 컨설팅 수행 기관 현황

- *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▶ 사업안내 ▶ 산업안전 ▶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▶ 공지사항 ▶ # 36 (컨설팅기관 신규 등록 절차 : 상기 공지사항 ▶ # 33)



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방법



① 컨설팅 과제



☑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이 협의하여 협력업체의 업종 및 수준을 고려, 지원 분야 및 컨설턴트 투입 규모, 수행기간 등 자율 설계

☑ 매칭지원 계획 수립(계획서 작성 등)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진단 필요 시,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계획 상 실태 컨설팅 소요일수에 포함 가능.

(1단계) 컨설팅 과제 선정

☑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	☑ 산업안전분야 ☑ 산업보건분야
☑ 안전관리 역량 향상	☑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(중대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)
☑ 안전의식 확산	☑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(각 과제별 포함)



(2단계) 컨설팅 절차별 컨설턴트 투입계획 수립 (총 소요비용 산정)

① 실태 컨설팅	☑ 컨설턴트 투입 ^{1),2)}	☑ 등급 × 인원(2인1조) × 일수(3~5일)
②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• CEO 인식개선 •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•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	☑ 강사 투입 ³⁾	☑ 등급 × 시간(최대 2시간/회) ※ (50인 미만) 협력업체 당 최대 2회 이내 [단, 관리감독자 이상(관리자,CEO 등) 50%이상 참석] ※ (50인 이상) 협력업체 당 최대 3회 이내 [단, 관리감독자 이상(관리자,CEO 등) 30%이상 참석]
③ 확인 컨설팅	☑ 컨설턴트 투입	☑ 등급 × 인원(2인1조) × 일수(2~3일)

※ 컨설턴트 투입 기준 특례(컨설턴트가 “기술사 또는 지도사”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)

- 실태 컨설팅 : 1인 × 5~8일, 확인 컨설팅 : 1인 × 3~4일 실시 가능

* 컨설턴트를 2인1조로 구성시에는 상기 표의 기준 적용

※ 협력업체 당 컨설팅 소요비용 : 인원 × 투입일수 × 컨설턴트 등급별 단가(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참조)

※ 컨설팅 수행기간 : 3월 ~ 10월까지 약 8개월 한도 내 설정(~11.10까지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)

※ ②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) 컨설팅 과제별 각각 실시(2개 이상 과제 또는 2개사 이상 통합교육 불가)

※ 컨설턴트 투입계획 수립 기준

1) 컨설팅 1회 당 『컨설턴트 등급 기준표』의 “고급기술자” 등급 이상 1인 필수 참여

2) 컨설팅 1회(1일) 컨설턴트 투입시간 : 5시간 이상 기준(1개소)

3) 교육 강사는 반드시 “실태 컨설팅” 참여 컨설턴트 중에서 지정



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방법



② 안전보건 활동과제 (1유형-컨설팅 외 추가과제)



- ☑ 모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협의하여 컨설팅 과제 이외 안전보건 활동 또는 안전보건물품 지원 등의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계

(1단계) 안전보건 활동과제 선정

① 안전보건 세미나(간담회, 포럼 등)	☑ 컨소시엄 별 추진 주제, 장소 및 대상 등 선정
② 안전보건 캠페인	☑ 컨소시엄 별 추진 내용, 장소, 참석자 등 선정
③ 안전보건물품 구매 지원	☑ 협력업체 별 지원 품목 및 범위 등 선정
④ 안전보건 자료 제작·배포	☑ 컨소시엄(협력업체) 별 제작 내용 및 범위 등 선정
⑤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	☑ 협력업체 별 교육지원 대상자, 교육과정 등 선정
⑥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/W(플랫폼) 구축·운영	☑ 프로그램 S/W(플랫폼) 종류, 설치범위, 운영비용 등 선정
⑦ 기타(상기 1~6 외의 안전보건 활동)	☑ 활동과제명, 추진내용, 참석대상 등 선정



(2단계) 활동과제 세부내역 작성 (추정액 산정)

① 활동과제명	☑ 모기업이 선정한 활동과제명 기입(상기 1~7번)
② 실시시기	☑ 선정한 활동과제에 대한 추진일정(장소 등) 기입
③ 추진내용	☑ 선정과제에 대한 주요 활동 주제 등 기입
④ 지원품목	☑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품목 및 안전보건물품 등 기입
⑤ 참여 협력업체	☑ 활동과제 참여 협력업체수 및 근로자수 기입
⑥ 산출내역	☑ 소요 비용에 대한 추정금액을 기입
⑦ 기타	☑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

※ (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) 안전보건 활동과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[소요비용 추정금액은 모기업에서 제출한 내역으로 결정(별도의 적정성 검토(산출) 불필요)]

※ (수행완료 심사위원회)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의 적정성 및 소요비용을 모기업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평가하여 최종 사업비 정산 실시



첨부1_매칭지원 컨설팅 과제별 세부내용



구분	지원분야	세부내용	
위험성 평가 실행력 강화	산업 안전 분야	기본과제 위험성평가 기법의전수	☑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·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KRAS(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) 사용법 및 시현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
		자율과제 3대사고유형· 8대위험요인	☑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분야(3대사고유형·8대요인) 중점으로 유해·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락사다리·지붕·고소작업대·비계, 끼임방호장치·LOTO, 부딪힘흔재작업· 충돌방지장치
		자율과제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	☑ 사업장의 폭발위험(인화성·분진 등)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제시(폭발위험장소 구분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정설계도서 파악 ② 공정조사(누출원의 종류, 수, 위치) ③ 누출원 계산 ④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⑤ 방폭전기기기 선정 및 관리 ⑥ 폭발위험장소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등
	산업 보건 분야	자율과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	☑ 화학물질(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)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정선정 ②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③ 노출수준 빈도 결정 ④ 유해성 강도 결정 ⑤ 위험성 계산·결정 ⑥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⑦ 예방조치 실행 등
		자율과제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	☑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/부서/라인/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(공정별) ③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(설문지) ④ 유해요인조사 증상조사표 (통계) ⑤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작성 ⑥ 작업환경 개선 실시 ⑦ 유해성 주지 (교육) 및 조사방법 교육 등
		자율과제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	☑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, 유해가스 측정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밀폐공간 조사 ② 밀폐공간프로그램 수립절차 ③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④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대책 ⑤ 보호구 ⑥ 밀폐공간 표지부착 및 교육 등
안전관리 역량향상	자율과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	☑ 위험성평가 중심의 체계구축 평가 및 개선대책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요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①위험요인 파악 ②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근로자 참여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	
안전의식 확산	각 과제별 포함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	☑ CEO 인식개선,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,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등	



첨부2_안전보건 활동과제(1유형-컨설팅 외 추가과제) 세부내용

- ☑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이외에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과제
(사업비 정산 : 총 소요비용의 50%를 공단 → 모기업에 정산·입금)



1 안전보건 세미나(간담회, 포럼 등)

-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
- 대상 : 사업 참여 모기업 및 협력업체 CEO, 근로자 등
- 예산지원 범위 : ① 장소 임차료, ② 참석자 식대(1일 최대 3식), ③ 출장 여비, ④ 강사료, ⑤ 안전보건 홍보물(참석자 당 1개), ⑥ 세미나 물품(현수막, 다과,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(임차), 필기류 등) 등

2 안전보건 캠페인

-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
- 대상 :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, 근로자 등
- 예산지원 범위 : ① 참석자 식대(1일 최대 2식), ② 캠페인 필요 물품(현수막, 피켓 등) 등

3 안전보건물품

- ☑ 지원한도 : 1유형 매칭비용 총액의 50%(최종 확정금액에 따라 조정),
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금 한도액은 5천만원

지원품목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①항3호에 따른 개인보호구(안전인증 대상품) 등
①안전모, ②안전화, ③안전장갑, ④방진마스크, ⑤방독마스크, ⑥송기(送氣) 마스크, ⑦전동식 호흡보호구, ⑧보호복, ⑨안전대, ⑩보안경, ⑪용접용 보안면,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, ⑬폭염대비 예방물품(쿨-키트)
- ①자동제세동기(AED), ②가스농도측정기, ③산소농도측정기, ④공기치환용 환기팬, ⑤검전기, ⑥접지저항측정기, ⑦절연저항측정기, ⑧클램프미터, ⑨만능회로측정기, ⑩열화상카메라, ⑪누전차단시험기, ⑫소음측정기, ⑬혈압계, ⑭조도계, ⑮위험물보관저장설비
- 안전보건표지(스티커 등), 소화기 등

지원대상 사업 참여 지원기업 및 근로자(모기업 제외)

예산지원 범위

- 지원품목 1) : ① 소모품(방진마스크, 보호복)의 경우 근로자 1명 당 3개월 수량(60개 내외),
② 안전모·안전화·안전장갑은 근로자 1명 당 1개 (단, 쿨-키트는 근로자 1명당 5개 이하)
③ 그 외 품목은 작업조건(공정)별에 따라 근로자 1명 당 1개 (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)

지원품목 2) : 지원기업 당 1대

- 단, 고정설치형의 가스농도측정기·산소농도측정기, 공기치환용 환기팬, 위험물보관저장설비는 필요공정 수량만큼 지원하되, 지원기업 당 최대 3대 이하(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)
- 개인 휴대형 가스농도측정기,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요 근로자수 만큼 지원(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)

지원품목 3) : 지원기업 당 필요수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

첨부2_안전보건 활동과제(1유형-컨설팅 외 추가과제) 세부내용

4 안전보건자료 제작·배포

- 1)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
- 2) 제작범위 : 사업 참여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(모기업 제외)
- 3) 예산지원 범위 : 자료 제작·배포 비용 등

5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

- 1)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
- 2) 지원대상 : 사업 참여 지원기업 CEO, 부서장급 이상 또는 관리감독자(또는 이에 준하는 자)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(모기업 제외)
- 3) 예산지원 범위 : ① 교육비, ② 교육출장 여비 등

6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/W(플랫폼) 구축·운영

- 1) 주제 : 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 등
- 2) 대상 : 사업 참여 협력업체 등(지역 중소기업 포함)

7 기타(상기 과제·물품 외)

- 1) 지원결정 :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
- 2) 기타 :
 -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(공단→신청 모기업)
 - 상기 1~6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“예산지원 범위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수행에 필요한 사항(항목)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

※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, 결정내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증빙자료(견적서, 세금계산서, 교육 이수증,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) 제출

단, 안전보건물품의 경우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물품의 해당 협력업체 불출 사진 및 수령증 제출(일부 품목은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,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출)





첨부3_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

☑ 컨설팅 소요비용 = 투입일수 × 투입 컨설턴트 등급별 단가

'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(기타분야) 기준 적용(1인, 1일 기준)/교육은 1시간 기준



☑ 컨설턴트(강사) 등급 및 자격기준

구분	기술자격 및 경험기준	학력 및 경험기준	지원단가(원) (부가세 포함)
현장 점검 및 컨설팅	기술사	☑ 관련분야 기술사* · 지도사** 자격을 보유한 자 * 기계, 전기, 화공, 인간공학, 안전분야, 보건분야 등 ** 산업안전지도사, 산업보건지도사	800,000
	특급 기술자	☑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☑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	650,000
	고급 기술자	☑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☑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☑ 간호사	560,000
	중급 기술자	☑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☑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	450,000
	초급 기술자	☑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☑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	400,000
교육	(가)군	☑ 박사, 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	300,000
	(나)군	☑ 그 외	240,000

☑ 출장여비 추가 계상 : 관내(2만원), 관외(8만원)

▶ 컨설팅기관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관내 · 관외 판단